

수원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78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786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508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문옥, 박정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11.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508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0. 1. 접수 제148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순번 7항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안희경, 판사 석윤민

(별지)

목 록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 1398㎡2. 전 4924㎡3. , , , ,

위 지상

경량철골조 유리지붕 단층 식물재배온실 4964.4㎡

경량철골조 유리지붕 단층 식물재배온실 4964.4㎡

